

자체점검제도 소개

– 소방시설은 시설주 스스로가 점검관리해야 –



김 철 종

〈내무부 예방과 안전담당〉

1. 머리말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증가속도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이 대형·고층화되고 있다.

'96년 1월 1일 현재 전국의 소방대상물은 41만3천5백70개소로서 이중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은 3천9백98개소, 2급 방화관리 대상물은 8만8천7백65개소이며, 전년대비 전체 소방대상물은 5.3% 증가한 반면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은 9.7%, 2급 방화관리 대상물은 12.1% 증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편리한 삶의 추구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이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각종 대형 사고의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 욕구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로부터 이러한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진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시설이 언제 어느 경우에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미 관주도의 소방검사는 한계에 도달하여 자체점검 체제로 전환되었고, 소방검사는 이에 대한 확인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기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제도의 필요성과 제도의 도입, 개선 경위 및 현행 제도를 간

략히 소개하고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2. 필요성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방화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자신은 물론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소방관서의 정기 소방검사(연 1회~2회) 이후 다음 검사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소방시설은 상시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고장 등을 쉽게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검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므로 유사시 활용 가능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특수장소에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외에 자체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서 점검자의 자격을 차별화하여 점검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3. 제도의 변천

'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이후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가 관주도의 소방검사에만 의존하여 왔으며, 이후 소방관서 소방검사의 실시 횟수만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방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관주도의 소방검사 인력상 한계에 도달하게

〈표 1〉 소방대상물별 점검의 종류 및 횟수

소 방 대 상 물	점검의 종류	점검횟수	점 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프링클러·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스프링클러·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외관점검 작동 및 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매월 1회 연 4회 연 2회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 주임
기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외관점검 작동 및 기능점검	매월 1회 연 4회	방화관리자

되었다.

따라서,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상처 관계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소방검사 이외에 자체적으로 정기점검하여 기록 유지하는 자체점검 제도가 '83년 12월 30일 소방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수차례 걸쳐 개선, 보완되어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체점검의 제도 도입

- 소방법 개정('83. 12. 30) : 제29조 제3항 신설
- 시행령 개정('84. 6. 30) :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전문개정('84. 8. 16) : 제143조

〈주요 내용〉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율적인 방화관리 체계 확립의 길을 열어 놓았다.

나. 자체점검 제도의 개선

- 소방법 개정('91. 12. 14) : 제32조
- 시행규칙 개정('92. 9. 19) : 제29조·제30조

〈주요 내용〉

자체점검의 종류 및 횟수가 많아 형식적인 점검이 될 우려가 있고, 전문 점검업 제도의 미비로 자체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정밀점검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함으로써 전문 점검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점검의 종류 및 횟수를 줄여 점검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결과는 점검 실시후 15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소방대상물별 점검의 종류

소방대상물	점검의 종류	점검횟수	점 검 자
방화관리자	작동기능점검	연 2회	소방시설관리사
선임대상	종합정밀점검	연 1회	방화관리자
기타 대상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연 2회 연 1회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연중 균등한 간격이 되도록 실시

다. 점검업체에 의한 의무점검제도 도입

- 시행규칙 개정('94. 10. 27) : 제29조(시행일 : '95. 7. 1)

〈주요 내용〉

특수장소의 자체점검이 주로 방화관리자에 의하여 수행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복잡한 시설에 대한 전문 점검의 필요성과 불량시설에 대한 소속 직장의 예산상의 고려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m² 이상인 특수장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토록 하였으며 작동기능 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 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점검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감축하였다.

〈표 3〉 자체점검의 대상별 점검자

소방대상물	점검의 종류	점검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m ² 이상인 특수장소	작동기능점검 (상반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자
1호 이외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종합정밀점검 (하반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방화관리자
기타 대상		소방시설관리사 관계인

라. 자체점검 자격 등 조정

– 시행규칙 개정(’95. 12. 29) : 제29조·제29조의2

〈주요 내용〉

점검 대상에 비하여 점검 업체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수료의 과다 요구 등 자체점검 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됨에 따라 비교적 화재 위험성이 적은 아파트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의제도록 하였다.

4. 현행 제도

가. 도입 취지

자체점검 제도는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어 수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점검 의지의 미약과 관계인의 점검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의 개선과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종전의 제도는 자체점검을 방화관리자(관계인 포함) 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토록 하였으나,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등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형 대상물의 경우 방화관리자의 점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점검장비의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되기 쉬움에 따라 전문 점검업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형대상(1만m² 이상) 중 점검에 전문성을 요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상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점검업을 등록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나. 자체점검 개요

(1) 대상 :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2) 점검의무자 : 특수장소의 관계인

(3) 점검자의 자격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m² 이상인 특수장소(아파트 제외) : 소방시설관리사

※ 1만5천m² 이상(’95. 7. 1부터) : 1천3백20개소

1만m² 이상(’96. 7. 1부터) : 2천5백22개소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방화관리자. 9만2천41개소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 관계인. 32만8백7개소

(4) 점검의 종류 및 점검횟수

① 작동기능 점검 : 상반기에 1회 이상

② 종합정밀 점검 : 하반기에 1회 이상

(5) 방법

①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업자가 대행

②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여야 할 대상은 소방시설관리사를 채용하거나 점검업체에 대행하여 실시(소방시설 점검업체:35개소(’96.2.24 현재))

③ 소방시설관리사가 자체점검하여야 할 대상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④ 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봉인 또는 겸인 조치

⑤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사항을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고 비치

(6) 혜택

① 당해 연도 소방점검(예방점검)을 면제

② 방화관리 업무를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법정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소속 직원중 점검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 가능

(7) 벌칙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장소의

(표 4) 타 분야의 자체점검 제도

법령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검사 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제조·저장·판매시설	총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
방법	사업자 또는 공사·검사기관에 대행 실시	사업자 또는 검사기관에 대행	사업자 또는 공사·검사기관에 대행
검사 시기	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를 실시 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전후 30일 사이	완성검사·정기검사·안전진단·자체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0일 사이	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0일 사이
수수료	공사 : 규칙에 규정 검사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함.	규정 없음.	공사 : 규칙에 규정 검사기관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함.
검사 시설	규칙에 규정	규칙에 규정	규칙에 규정
검사 결과	검사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	검사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	검사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점검결과 보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m² 이상인 특수장소의 관계인과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소방시설 점검업체는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자체점검의 의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을 하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책임하에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으로 본다.

5. 다른 분야의 자체점검 제도

가. 가스시설

가스시설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산업시설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자체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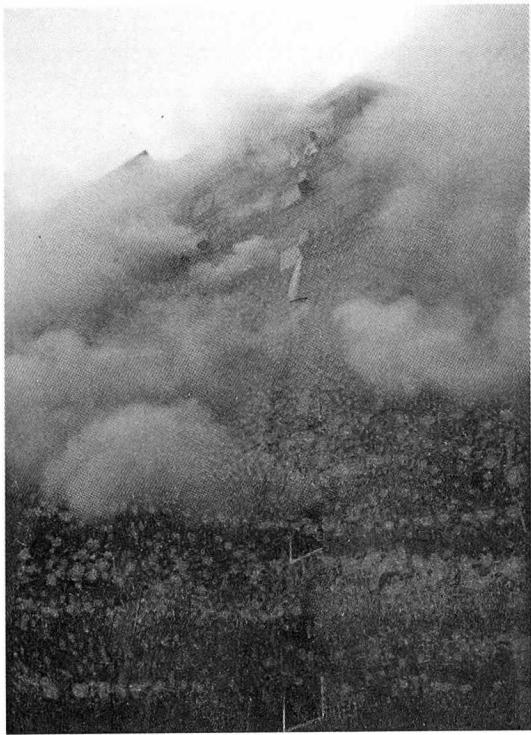
- ① 검사대상 : 프레스 및 전단기·압력용기·화학설비 등 13종(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
- ② 검사횟수 :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1월, 6월, 1년, 2년에 1회 이상 실시
- ③ 검사수수료 : 규정 없음.
- ④ 검사결과 : 3년간 보존
- ⑤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6. 문제점

현행 자체점검 제도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1만m² 이상의 특수장소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비용의 부담과 소방시설관리사 부족 등 여건이 미흡하여 조기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처럼 방화관리자가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치 않았으나 소방시설관리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경우 점검수수료라는 비용을 새로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현행 자체점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부족으로 자유경쟁



체제가 확립되지 않음에 따라 점검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수익이 적은 대상은 점검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셋째, 자체점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정한 수수료의 산출 근거가 미약함으로 인하여 부당한 점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자체점검 수행에 따른 점검사항 및 기준이 미흡하고 점검업자의 책임 한계의 불명확으로 유사시 책임 추궁이 곤란한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7. 향후 발전방향

점검 업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의제할 경우 자체점검 수요가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금년 3월에 실시된 제3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적정 인원의 소방시설관리사가 배출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체점검 제도가 완전

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 수수료의 적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업자에게 협정 수수료의 기준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동 수수료 기준은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방시설 점검업자의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동시에 자율 방화관리 체제의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점검 제도 취지 및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여 동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맺는 말

문민정부 아래로 작은 정부의 구현과 행정규제의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공공업무중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이양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방분야도 많은 업무가 관련단체 또는 민간에 이양되었으며,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도 인력상의 한계 및 전문기술의 요구로 인하여 자율점검 체제 및 전문 점검업 제도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전기기구 등 가전제품 등은 고장이 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치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소방시설은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고장나서는 안되며, 화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언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을 계기로 자기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율의식이 확실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며, 자체점검 제도의 조속한 정착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첨경임을 우리는 다함께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